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4)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록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이용시설 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에 관한 자료
 2. 제9조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의 안전교육 대상자 수, 성명, 재직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록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관련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1. 어린이이용시설 명칭 및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
에 관한 자료

2. 제9조에 따른 어린이이용시
설의 안전교육 대상자 수, 성
명, 재직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
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자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
설 관리주체, 교육기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
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
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
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
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 락 처	(044) 205 - 4214